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6 호 | 2019.02.28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제조세 솔루션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전가격 그룹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직면한 국제적인 세무 및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자문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신속하면서도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이전가격 자문을 제공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그룹을 소개한다.

이전가격 분야 최고 베테랑 전문가 40 명 포진...다국적기업 SOS 대응

40 여 명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 그룹(리더 이용찬 전무)'은 다국적기업 그룹 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국제거래와 이에 따르는 국내외 조세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이전가격 문서화 서비스,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법 개정 및 국제청의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뜻하는 '이전가격'은 최근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험관리 항목이 됐다. 이런 국제 이슈에 따라 이전가격 그룹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이전가격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후적으로는 이전가격 문서화 및 대응 자문을 통해 과세당국과의 분쟁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이전가격 그룹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사업모델 최적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세무조사 대응 및 상호합의절차, BEPS 보고서 문서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글로벌 이전가격에 대해 통합적이고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EPS 를 비롯해 국제적인 과세 이슈를 해결하는 세무자문본부 이전가전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상훈 Staff, 엄지윤 Senior, 이소윤 Staff, 김선우 Senior, 최현영 Senior, 남용훈 상무, 인영수 상무, 전예빛나 Staff, 권정재 Senior, 이용찬 전무, 최유진 Manager

국내외 실무경험으로 무장한 최고 전문가 확보로 통합 솔루션 제공

이전가격 그룹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를 직접 추진하고 승인한 최고의 전문가를 포함해, BEPS action plan 대응 자문부터 상호합의 및 국제거래(이전가격) 조사업무 등 기업 세무 인프라 자문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세무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송성권 부대표는 수년간 국세청에서 국제 조세관리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다수의 APA 를 직접 결정하고 승인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현재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전가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 그룹의 리더인 이용찬 전무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재직 시절, 미국 및 일본 APA/MAP 업무를 총괄한 전문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 반도체,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과 국가와의 APA 경험을 갖춘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APA, 상호 합의 및 국제거래(이전가격) 조사업무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가격 그룹'의 주요 서비스

1) BEPS Action Plan 대응 자문

-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한 action plan 도입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특수 관계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과세 위험 진단 및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문서화 서비스 제공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 APA 전략 수립부터 신청서 작성, 과세당국 간의 상호 합의 회의 지원 및 타결 후 후속 절차 지원 등 서비스 제공

3) 세무 조사 대응 및 상호 합의 절차(Mutual Pricing Arrangement, MAP)

- 이전가격 관련 세무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다국적기업이 부당한 이전가격 과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사 대응 서비스 제공

4) 사업모델 최적화(Business Model Optimization, BMO)

- 다국적기업의 사업 운영과 세법 요구 사항 간의 균형을 잡고 이를 사업 모델에 통합시키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1.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감식의 의미로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상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 조약 또는 국제 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최근 OECD는 최소 기준, 공통 접근, 모범 관행 권고 안 지침 등의 조치 사항을 제정하면서 BEPS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란?

Advance Pricing Arrangement(APA)로 하나 이상의 과세 관청으로부터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전가격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적인 제도다.

3. 세무조사 대응 및 상호합의 절차란?

Mutual Pricing Arrangement(MAP)은 전략 수립, 신청서 작성,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회의 지원 및 후속 절차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 부당한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다.

BEPS 문제, 사전 위험요소 차단이 '관건'

최근 BEPS, 즉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및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의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profit shifting)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base erosion)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OECD에서는 2015년 BEPS 방지를 위한 15개의 action plan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action plan을 승인한 바 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action plan을 도입해 BEPS를 방지하고,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전가격 세제를 개정 및 강화하고,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전가격 이슈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역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매년 통합 기업 보고서(master file), 개별 기업 보고서(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등의 BEPS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화해 기업의 정보 공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의 정보 공개 확대에 따라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BEPS 보고서 도입에 따라, 기업의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그룹은 해당 기업들에게 최적의 대응 방안(5가지)들을 제시하고 있다.

- ✓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하되,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
- ✓ 기업의 주요 사업이익 창출 요소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와 기능 및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 여부 점검
- ✓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서의 이윤 배분(allocation of profit)에 대한 경제적 및 사업 운영 상의 근거 문서화
- ✓ 다국적기업 그룹이 속한 각 지역에서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해당 그룹의 일관성 있는 문서화
- ✓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위험의 사전 제거를 위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활용

[TP Risk]	[APA 신청 통한 TP Risk Hedge 가능]	[APA 승인 시 Benefit]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조사 위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상 위험 제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조약에 근거해서 양 과세당국간(쌍방) 합의를 거쳐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하므로 TP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가능(단, 일방의 경우 별도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 APA 소급 적용 신청 시 향후 사업연도에 대한 TP 위험 근본적으로 제거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70AD47;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이익률 체계적 관리 가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방 APA 승인 받는 경우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TP risk 없이 현지법인의 이익률 관리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과거 사업연도 이전가격 위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과거 사업연도 이전가격 위험 해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A 신청 시 "소급적용"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리스크까지 해소 가능 (과거 5개년(쌍방)/3개년(일방) + 향후 5년 등 최장 10개 사업연도까지 위험해소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이전가격 세무조사 유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경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APA 신청 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유예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70AD47;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A 승인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국조법 제 13조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70AD47;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A 승인 시, 해당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Compliance Burden 감소)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APA)의 장점>

최근에는 '일방 및 쌍방 APA' 가 적극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추세다. 이 방법은 BEPS 보고서 제출 등 이전가격 분야에서 증가된 세무상 위험을 사전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전가격 그룹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진행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다.

지난 12 월 APA 가 타결된 S 사 사례에서는, S 사는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 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과세 당국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6 ~ 2020 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거래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원활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 이전가격 그룹은 현재 복잡한 조세법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법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제안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새로 쓰기' 용역에서 이전가격 부분을 맡아 법령체계의 개편 및 조문별 새로 쓰기를 수행해 납세자의 조문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전가격 부문은 국내법 외에도 OECD 이전가격 지침이라는 글로벌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OECD 이전가격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이를 국내법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국내 법률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이전가격 그룹의 최대 목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가지 규제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전가격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고객과 함께 도약해갈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한다.

글·사진 Brand & Communications 팀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